KOSHA GUIDE

C - 89 - 2013

하여야 한다.

- (8) 호우, 홍수,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주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 야 하며, 풍속이 초당 15미터이상, 강우량 시간당 10미리미터 이상, 시계 1킬로미터 이하의 안개일 때에는 해상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9) 조류가 1~4노트(Knot)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, 2노트 이하에 서도 해상작업선의 계류방향을 저항이 적은 쪽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
- (10) 해상 작업선의 작업한계파고는 그 크기에 따라 1.5~3.0미터이므로 해상 작업선의 종류에 따라 사전에 작업한계파고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1) 해상 작업선에는 익사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- (12) 해상 작업의 경우 소형선박의 이용이 많으므로 소형선박 승하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13) 잠수지역에는 접근금지 시설을 설치하고 잠수설비는 잠수를 실시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잠수 작업위치에는 부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4) 심해 잠수작업에는 자동 승하강 시스템과 감압용 챔버(Deck decompression chamber)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.
- (15) 안전한 해상 작업을 위하여 구명조끼, 구명로프, 구명튜브 등 구호장비를 갖추어야 하고, 기타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-2-2012 수상 바지(Barge)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른다.

6. 갱구부 안전작업

- (1) 작업장 및 통로의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(2) 낙석위험지역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.